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4가단100542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5. 17.  
판 결 선 고 2024. 5. 31.

## 주 문

-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3. 10.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원고가 D에 대하여 확정된 3건의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31.자 2017차전245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16.자 2020차전1578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17.자 2021차전13497)에 기초한 합계 26,557,199원 및 그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D의 아버지인 E는 2023. 4.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F, 자녀 D, 피고가 있었는데, F, D, 피고는 2023. 10. 12.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2023.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은 채무초과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7, 11,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D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이가 D의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선의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7 지분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아름

[별지]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 163.6㎡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

1층 84.56㎡, 2층 90.27㎡, 3층 82.17㎡, 지층 84.56㎡ 끝.

